

핵심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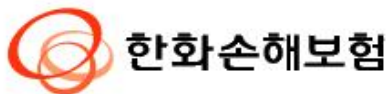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LIFEPLUS 땡땡이보험






고객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별지> 보험상품의 특성 정보 아이콘에 대한 설명

구분	아이콘	설명
①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 상품 :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보상
② 보험유형		- 보장성보험 :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③ 청약철회기간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1. 보험계약의 개요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한화손해보험(주)
<input type="checkbox"/> 모집자	
<input type="checkbox"/> 보험기간	
<input type="checkbox"/> 보험상품명	LIFEPLUS 땡땡이보험[LIFEPLUS 땡땡이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목적물	
<input type="checkbox"/> 계약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 주요 체결내용	
<p>※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① 보험계약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 1566-80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전화 : 02)1566-8000)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④ 주소변경통지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 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의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이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일부 상품(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및 근재보험 등)은 상기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산출 기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LIFEPLUS 댕댕이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자녀

□ LIFEPLUS 댕댕이보험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3.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5.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다음의 질병 : 홍역, 전염성간염,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켈넬코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심장사상충감염증, 범백혈구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등
 6. 광견병 및 그에 기인한 질병
 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8.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환(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및 그에 기인한 아래의 질병. 단,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가. 진행성망막위축증, 유전성 백내장, 눈꺼풀 외반, 눈꺼풀 내반, 망막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증성질환, 동맥관개조증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나. 위가 이외의 선천적 또는 유전적 질환
 9.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구강내 질환
 10. 반려동물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교배, 조산, 유산 또는 이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및 출산후 증상치료
 11. 정기적인 처치(귀(耳道)청소, 항문샘(항문낭)짜기, 침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검사 또는 처방식에 의한 치료
 12.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1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14. 중성화(불임 거세)수술, 단이(斷斷), 단미(斷斷), 성대제거, 귀박제거,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손발톱제거, 미용정형수술, 시험개복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1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8. 위 제1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백신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정기검진 등
 2. 불임 또는 피임을 위한 수술 또는 처치에 수반되는 비용
 3.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헤르니아, 항문샘(항문낭) 제거 등 건강한 반려동물에 시행하는 외과적 수술 또는 기타의 검사
 4.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처치
 5. 목욕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벼룩, 쟁켄(Zecken), 모낭충의 제거비용
 6.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 대체적 처치 및 임상수의학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
 7. 동물병원으로의 이송비
 8.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9.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한 각종 서류(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등) 작성비용(우편요금 포함)
 10. 의약품 등의 운송비용
 11. 건강상담 비용, 병리조직검사료, 마이크로칩 삽입비용
 12.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13.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
 14.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4.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LIFEPLUS 땡땡이보험 면책사항 용어풀이

-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일으킴
-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 랩토스피라 감염증 : 랩토스피라 세균에 감염되어 황달, 신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킴
- 켄넬코프 :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소화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 심장사상충 감염증 : 개사상충(기생충)이 심장이나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호흡곤란, 혈액순환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킴
- 슬관절탈구 / 고관절탈구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탈구(빠가 빠지는 증상)
- 슬관절형성부전 / 고관절형성부전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성장이 지연 또는 형성이 없거나 늦어진 상태
- 유전성 망막이형성 / 진행성망막위축 / 유전성 백내장 : 주로 선천적, 유전적 질병으로 눈(망막, 수정체)의 비정상적 발육, 변성, 위축, 백내장(단백질로 인한 수정체의 혼탁) 증상을 일으킴
- 항문샘(항문낭) 찌기/제거 : 항문샘(항문낭)의 배출장애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해 항문낭 액을 짜서 배출해주는 처치/ 또는 제거하는 시술
- 시험개복술 : 검사를 목적으로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 잔존유치 :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아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 잠복고환 :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 배꼽헤르니아 :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다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보험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66-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6. 기타 유의 사항

①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모집자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자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모집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의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④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⑥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 본인을 위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66 - 8000

⑦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⑧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한화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유의사항

□ 방카슈랑스 관련 유의사항 (※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에 한함)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접수방법 및 조회 내용 등]

구분	생존자		사망자
	생존자(방문) 보험가입조회	생존자(인터넷) 보험가입조회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접수방법	방문(협회)	인터넷(협회 홈페이지)	방문(협회)
조회신청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조회대상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 대리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	상속인
조회결과	보험계약		보험계약/대출/보증채무
조회내용	보험회사,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계약상태, 모집점포(전화번호)		보험회사,상품(대출)명,증권(대출)번호,보험기간,계약상태,모집점포(전화번호),대출잔액,만기상환일자
조회기준일	조회신청일(=접수일)		사망일
처리시간	즉시	1~2일 (단, 전산장애 발생시 최장 7일 소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까지 결과 확인 가능)	즉시

※ 세부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FEPLUS 땀땀이보험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보관용)

<input type="checkbox"/> 설계번호 :	<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자 :
---------------------------------	----------------------------------

번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4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상품별 특이사항 등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6	예금자보호, 주요 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가능여부), 보험계약 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8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모집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서명} _{취급자}

보험계약자 확인

본인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분은 계약자가 자필로 기재 하십시오.

20 ^{서명} _{보험계약자}

*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 예금자보험관계 금융정보취약계층 관련 계약자 확인 >

■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 체크)

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 요청 고객

②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고객명 :

서명 또는 (인)

※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 요청 고객이란, 모집인 등의 별도 안내 없이 고객(계약자)가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우선적 설명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에 한함